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5030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24. 11. 27.

판결 선고 2024. 12. 18.

주 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피고는 C의 아들이다.

나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1)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회사'라고 한다)는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, C는 소외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, 원고는 기업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았다.

2) 원고는 소외회사와 C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그에 따라 '소외회사와 C는 연대하여 321,639,942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, 2024. 1. 10. 확정되었다(광주지방법원 2023차전126166호).

다. C의 피고에 대한 송금

C는 2019. 2. 5.부터 2019. 4. 9.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,220만원을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 2024. 11. 14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그 증여액 상당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.

나.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48599,48605 판결,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).

다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각 금전의 증여일은 2019. 2. 5.부터 2019. 4. 9.까지인데 그 각 증여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4. 11. 14.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, 이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.

판사김혜선

별지